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0/08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건축사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5.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4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3조제4항을 제3조제5항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100분의10”을 100분의5”로 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

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제5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한다.

제37조제3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제6호 중 "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미터이하(폭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의 단일필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를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제6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정비하고 민간 위원 및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제3조제1항)

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민간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 (제3조제2항)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 (제3조제4항)

라.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항 수정 (제10조제1항)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제26조제5항제3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수정 (제31조)

사.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점유·사용자로부터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 (제35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5호)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제37조제6항)

자.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62조, 제64조, 제71조)